

#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

## 수수료 산정 공청회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재정투자조사부

2016. 01. 19

# 목 차

<b>Section 1.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의 소개</b>	01
1) LIMAC의 설립배경	03
2) LIMAC의 기능 및 성과	04
3)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기간	05
4)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	
<b>Section 2.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 공청회</b>	
1)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	06
2) 수수료 산정 공청회 목적	07
<b>Section 3.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</b>	
1)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	08
2)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(2015년) 및 문제점	10
3)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	13
4) 기본수수료 산정기준	15
5) 부가수수료 산정기준	17
6)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 사례	18
7) LIMAC 조사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	19

# Section 1.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소개

- 1) LIMAC의 설립배경
- 2) LIMAC의 기능과 성과
- 3)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기간
- 4)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

## 1)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배경

### ○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투자사업의 중요성 증가

-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재정의 지출규모가 중앙재정의 지출규모를 넘어서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중요성 커짐
- 저출산, 고령화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에 크게 미흡한 자주재정의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
-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보면(2015년 예산기준), 전체 지출의 80.1%(138조 7,210억 원)가 정책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약 20%가 행정운영경비(24조 7,453억 원)와 재무활동(9조 7,927억 원)에 사용됨
- 정책사업 중 상당수는 지방의 자본투자사업이 차지하며, 자체사업 또는 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됨

### ○ 투자심사제도와 타당성조사

-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전에 자체 또는 상급기관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1992년부터 도입
- 2005년 12월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
- 관련제도의 도입·실시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

## 1)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배경

### ○ 기존 투자심사의 타당성조사 문제점

-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조사기관 자체선정, 용역에 의한 갑을 관계에 따른 조사결과의 객관성 문제
  - 수요를 과다 추정하거나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등 타당성 조사가 관대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향
  -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의 자체 산정 B/C와 감사원 재산정 B/C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, 조작 가능성 제기
  - 지자체, 돈 안되는 사업 '경제성'조작해 사업진행 [2015.10.15 기사]
- 타당성 조사기관의 전문성 문제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의문
  - 사회적 할인율(5.5%), 분석기간(30년)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미준수 사례 다수
  - 경제성 분석(BC)과 재무성 분석(PI) 혼동사례 다수
  - 2008~2015년(N=2,385) 중앙투자심사 자료 분석: (BC 결과) 0.1~14.43, (할인율) 1.75%~11%, (분석기간) 상이함

### ○ 최근 투자심사 결과의 경향

- 적정판정 비중 급감(2008년 44%→2015년 9%), 미통과 판정 급증(2008년 13%→2015년 36%)
- 2011년 이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엄격한 판정결과

## 2)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기능 및 성과

### ○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의 설립과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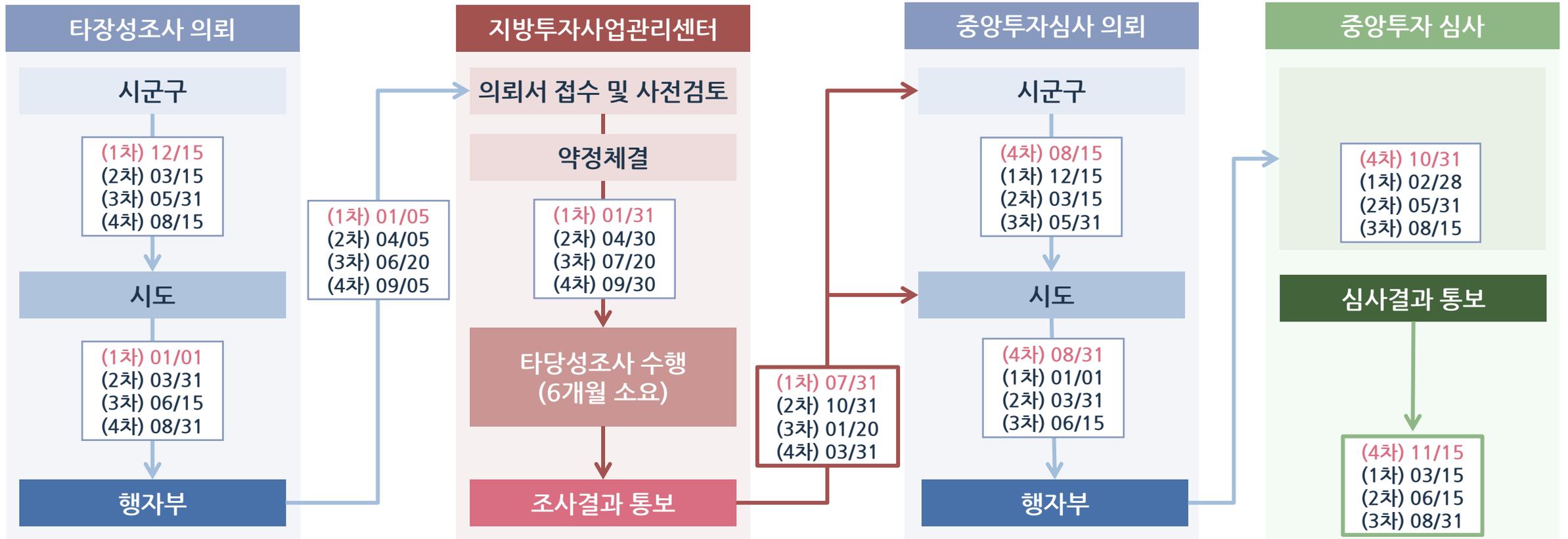
- 국민세금의 금전적 가치(VFM) 확보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
  - ▶ 중앙정부투자사업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과 유사한 기능
- 2014년 12월 1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(행자부 지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)
- 주요 업무: ①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, ②타당성 재조사, ③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 투자 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, ④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

### ○ 지난 1년간 LIMAC 의 성과

-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이 사전에 차단되고, 사전검토 강화(33건 의뢰사업 중 15건 반려, 18건 조사 수행)
  - ▶ 2015년 7건 완료, 2016년 1월 현재 11건 이월되어 진행중
  - ▶ 2016년 1차 조사의뢰 사업 13건, 현재 검토중
- 또한, 종전에는 전체의 88%\*가 타당성 조사의 편익/비용비(B/C) 값이 1 이상이었으나, LIMAC 타당성 조사에서는 7건 중 1건에 불과
  - ▶ \* '08~'15년 중앙투자심사에 제시된 타당성 조사 결과 기준
-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, 재검토 사유에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출한 쟁점과 정책적 분석의 내용을 적극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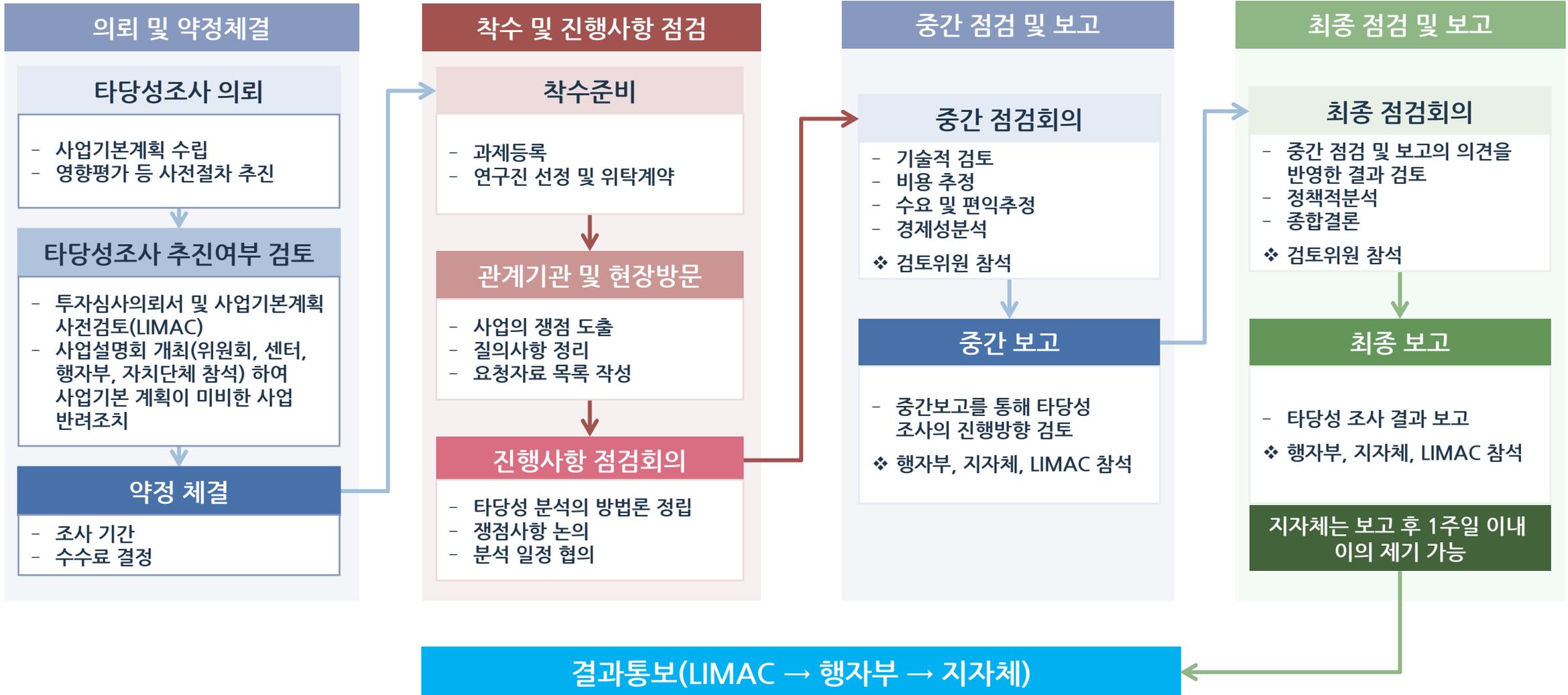
3)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투자심사 기간

- 1차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, 그 해 4차 중앙투자심사 가능



4) 타당성조사 수행체계 및 절차

○ 표준 타당성조사 수행일정 및 절차



## Section 2. LIMAC 수수료 산정 공청회

- 1)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
- 2) 수수료 산정 공청회 목적

## 1)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 개요

-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(행정자치부령 제50호, '15.12.24)
  - 제12조 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,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함
  
-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」(행정자치부, 2015)
  - 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약정하는 경우 조사 비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「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」에 따라 정하고 약정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
    - 「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」 산출절차: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 수수료 기준을 사업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,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결정
  
- 2015년에는 시·도의 일회성 출연금과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LIMAC을 운영하였으나, 2016년부터 수수료만으로 타당성 조사/재조사, 지침개발 등 투자심사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지원

## 2) 수수료 산정 공청회 개최 목적

-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의 타당성 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 및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조사 사업 수수료 산정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
- 2016년 LIMAC 타당성 조사과제의 수수료 기준(안)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및 반영

## Section 3. LIMAC 수수료 산정기준

- 1) 타당성조사의 주요내용
- 2)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(2015년) 및 문제점
- 3)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
- 4) 기본수수료 산정기준
- 5) 부가수수료 산정기준
- 6)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사례
- 7)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

## 1)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

### ○ 타당성 조사의 개념

-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, 재무성,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
-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, 투자심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하는 참고자료로서 기능

### ○ 타당성 조사 추진체계

- LIMAC 내부연구자로 PM(연구책임자)를 선정하고, 학계·연구소·민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
- 외부연구진 필요 이유: 다수의 연구팀의 참여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
  - 이때 외부 연구진은 전공, 연구분야, 타당성조사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적합한 연구진 선정
- LIMAC은 직접 분석 수행 및 외주 결과 검토, 각 조사과제간 일관성,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, 지침 및 방법론 개발 등 조사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연구 총괄
  - LIMAC은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분석기준,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일반 및 분야별 지침을 마련하고, 타당성 조사의 내·외부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
-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내부에서 모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향후 감사, 여론,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음
  - 외주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새로운 학문 및 방법론 도입을 통해서 분석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외주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
1) 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

○ 타당성 조사 분석내용 및 수수료 체계

- 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내용은 A.사업계획서 검토, B.기초자료분석, C.경제성 분석, D.정책적 분석, E.종합평가 등 5개의 모듈로 구성됨
-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
  - 비용 재추정, 설문조사, 교통수요추정, 특수한 기술성 검토, 감정평가, 환경성 검토, 민감도 분석, 재무성 분석, 기타 법률자문 등
- 따라서 LIMAC 수수료 체계는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하여, 주요 분석내용 5개의 모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에 반영하되,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부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함
  - (기본 수수료) 타당성조사 사업수행에 있어서,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수수료에 반영
  - (부가 수수료) 사업규모, 사업복잡성,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수수료 부과



2)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

○ 2015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

- (기본수수료) 건당 9천 5백만원 기준
- (부가수수료)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방법에 따라 차등 적용

유형	분석방법	금액
공공 청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사용가치 추정설문·FGI,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건당 25~50 백만원 소요</li> </ul>
산업 단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대상 설문조사·FGI, 직접효과 공간계량분석, 산업시설 외 시설별 효과추정·FGI, 복합시설 추가편익 추정 등</li> </ul>	
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수요 평가모델 분석,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·FGI 등</li> </ul>	
문화 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성적 수요추정(델파이 등), 이용객대상 설문조사·FGI, 비시장재화 가치추정설문·FGI 등</li> </ul>	
지차단체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사 착수이후의 계획변경에만 해당(별도협의)</li> </ul>

2)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

○ 2015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산정기준

- (총수수료) 상기 기본 및 부가 수수료를 합한 총 수수료의 개략적 추정은 사업규모, 사업복합성, 조사난이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음

구분		사업복합성 및 조사 난이도		
		단일시설·사업	2개 이상 복합기능 시설·사업	복합도시개발 및 복합단지 조성
사업 규모	1천억원 미만	95백만원	95~130백만원	-
	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	95~130백만원	130~160백만원	150~180백만원
	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	130~160백만원	150~180백만원	180~220백만원
	1조원 이상	-	180~220백만원	220~300백만원

## 2) 기존 수수료 산정기준 및 문제점

### ○ 약정에 의한 수수료 확정: 수수료의 경직성

- 타당성조사의 특성상 과제별로 다양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
- LIMAC에서는 약정체결시에 사전적으로 해당 조사 수행시 필요한 외부 전문기관, 외주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총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음
- 그러나 설문조사 비용, 감정평가 비용, 법률자문 비용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의 지출이 있었음.
  - 산업단지 설문조사 3000개 이후 유효표본 부족으로 재설문이 필요한 경우
  -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평가는 법정수수료로 수행 이후 비용 확정
  - 조사 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 인한 법률 자문 비용

### ○ 타당성 조사 사업별 수수료 금액의 격차 존재: 정확한 예측 곤란

- LIMAC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되며, 부가수수료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LIMAC에서 책정하여 약정단계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전적으로 구체적 금액을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
- LIMAC 홈페이지에 사업복합성과 사업규모에 따라 9500만원~3억원까지의 총수수료 금액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, 실제 1년간 조사 수행경험 결과, 보다 구체적인 수수료 책정기준 필요
- 2015년 타당성 조사를 수행 경험상 총사업비 규모에 선형적으로 수수료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, 추가 용역발주 건수와 금액에 따라 증가하므로 총사업비 규모보다는 사업유형 및 정형화 정도,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부가수수료 구체화

3)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

○ 난이도를 고려한 기본수수료 현실화

- 타당성 조사의 난이도(상, 중, 하)에 따라 기본수수료 차별화: 난이도는 정형화 정도로 판단
  - 난이도 (上) :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(복합단지, 복합도시개발)
  - 난이도 (中) : 정형화가 보통임(복합청사, 철도, 문화 및 관광시설, 체육시설, 환경시설, 항만)
  - 난이도 (下) :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(도로, 일반청사)

2015년 기본수수료

- 일률적 적용(0.95억원)

2016년 기본수수료

- 조사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(0.95~1.2억원)

○ 난이도별 기본 수수료 차등화 원인

- LIMAC 타당성조사는 복합청사, 산업단지, 문화 및 관광시설, 체육관, 도시개발사업 등 수요 및 편익추정 방법론이 정형화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함(약 60%)
  - 편익항목 자체의 설정부터 수요추정의 범위까지 개별사업별로 연구진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난해한 사업이 다수임.
-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댐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(60%)하고, 비교적 이들의 방법론은 정형화 되어 있음

3) 2016년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방향

○ 사업유형/추가분석 필요여부 등에 따른 부가수수료 구체화

- 2015년 LIMAC 타당성조사 수행경험을 통해 부가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를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체화

- 예 1) 타당성 조사18건 중 10건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재무성 분석을 회계법인에 의뢰
- 예 2) 용지보상비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50%를 넘거나, 용지개발 및 분양사업과 같이 용지보상비의 정확한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“사전표본평가”를 의뢰, 또는 기존 감평자료 존재시 사후감평 수행
  - 사전표본평가의 법정수수료가 사후에 확정되고, 사업별 차이(300~3200만원)가 크기 때문에 약정당시에는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2015년 3차 사업부터는 약정금액에 미포함(실비정산하는 것으로 약정)
- 예 3) 용지개발 및 분양사업(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 조성사업,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등) 은 기반시설 공사와 상부시설 공사를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용역 의뢰
  - 기반시설은 토목관련, 상부시설은 건축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필요
- 예 4) 교통수요 추정, 곤돌라 관광수요 추정, CVM을 통한 편익추정, 산업단지 수요추정을 위한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와 같이 전문적인 수요 및 편익 추정 필요시 용역 의뢰
- 예 5)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업내용이 관광, 주택, 상업, 산단, 대학교 등과 같이 다양한 복합시설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수요 및 편익추정이 시설유형별로 필요
- 예 6) 특수한 기술성 검토(특수교량, 장대터널, 선박 안전성 등), 환경성 검토(소음 실측, 오염원 분석 등 1차 데이터 수집 필요시)가 필요한 경우

## 4) 2016년 기본수수료 산정기준

## ○ 기본수수료 원가 내역

- 타당성조사는 학술용역(+R&D)으로 볼 수 있으며, 기본수수료의 원가는 크게는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로 구성됨
- 인건비: 직접적인 내부 인건비(45% 내외)
  - 인건비 단가: 행정자치부 '1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(2016.1.5.) 적용(참여율50%기준임)
  - 내부인력의 인건비는 조사사업 수행기간 6개월 기준, 참여비율은 12.5%(인당 연간 4건 수행 기준)
  - 책임연구원은 과제당 1인 기준
  - 연구원은 ①쟁점사항 분석, ②비용검토, ③수요·편익검토, ④ 정책적 분석 중 지방재정영향 각 1인 기준(총 4인)
  - 연구보조원은 ①기초자료 분석, ②경제성 분석, ③ 정책적 분석 중 지역낙후도, ④지역경제파급효과 각 1인 기준(총 4인)
  - 보조원은 1인 기준, 참여비율은 30%(인당 연간 3건 수행)
- 경비: 외주용역비, 회의비(자문비용 포함, 품질관리비용), 여비, 유인물비, 교통통신비, 전산처리비 및 기타
  - 외주용역비는 2,500만원 포함(25%내외)
  - 회의비는 품질관리를 위한 서면자문, 전문가 자문 등을 포함: 공식회의 6회 기준
  - (사업설명회, 진행사항점검회의, 중간점검회의, 중간보고, 최종점검회의, 최종보고)
  - 엄밀하게는 외주용역비와 회의비의 상당부분은 외부 인건비에 해당
- 일반관리비: (인건비+경비)의 5% 이내

## 4) 2016년 기본수수료 산정기준

## ○ 2016년 기본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

- 조사기간: 6개월 기준
- 조사과제 수수료는 해당 조사과제의 직접 비용만 포함; 단, 정형화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본수수료 차등화

단계	난이도	내용	수수료(만원)
기본수수료	상	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(복합시설, 복합단지 등)	12,000
	중	정형화가 보통임(복합청사, 철도, 문화·관광·체육시설, 환경시설, 항만)	11,000
	하	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(도로, 청사 등)	9,500

- 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이지만, 실제로는 조사 의뢰전, 의뢰후 약정체결까지 1~2개월, 또는 완료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 요구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검토 및 회의 등에 일정부분 인력 투입되고 있으나, 미반영
-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‘기술료’, ‘노하우’에 대한 보수 미반영
- 난이도별 기본수수료 차이: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습, 지침 개발, 다양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등 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비용들을 조사 수수료에 반영

## 5) 부가수수료 산정기준

- 유형별 부가수수료 : 사업량/사업비/유형 등에 따라 추가용역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기준으로 별도 부과

단계	유형	내용	수수료(만원)	비고
부가 수수료	①	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	1,500~2,500	특이 사항 에 따라 변동 가능
	②	• 복합시설사업(주택/산단/R&D/관광/교육 등)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	시설별 1,000~1,500	
	③	•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/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	1,000~2,000	
	④	• 사업규모가 큰 경우(ex.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) 또는 사업지가 광범위할 경우	1,000~1,500	
	⑤	• 특수한 기술성 검토(특수교량, 장대터널, 안전성 검토 등),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	500~1,000	
	⑥	• 용지개발 분양사업과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이 분리되어 추가용역 필요한 경우	1,500~2,500	
	⑦	•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(기업입주수요 조사), CVM 설문조사 등	500~3,000	
	⑧	• 기타 쟁점(법률 검토, 민원 관련 인터뷰 등) 등 특이사항	300~1,500	
	⑨	• 사전표본평가 및 사후 감정평가	실비정산	
	⑩	• 해외사례 또는 관련 자료 획득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한 경우	500~1,000	

6) 유형별 타당성조사 총수수료 산정 사례

공공청사

- 2015년 기준 : 0.98억원
- 2016년 기준 : [기본수수료(下) 0.95]+[⑤특수한 기술성 검토(내진설계) 0.05]=1억원

도로

- 2015년 기준 : 1.2억원
- 2016년 기준 : [기본수수료(下) 0.95]+ [①수요·편익추정 0.25]=1.2억원

마리나  
항만

- 2015년 기준 : 1.6억원
- 2016년 기준 : [기본수수료(上) 1.2]+[①수요·편익추정 0.25]+[③재무성 0.1]+[⑥기반/상부시설 별도 0.25]+  
• [⑦설문조사 0.1]=1.9억원

산업단지

- 2015년 기준 : 2억원
- 2016년 기준 : [기본수수료(上) 1.2]+[②주택+상업+교육/R&D 수요·편익추정 0.45]+[③재무성 0.1]+  
• [④대규모 사업 0.15]+[⑥기반/상부시설 별도 0.25]+[⑦설문조사 0.25]+[⑧법률검토 0.1]=2.5억원

복합도시  
개발

- 2015년 기준: 2.2억원(감평비 0.32포함)
- 2016년 기준: [기본수수료(上) 1.2]+[②주택+상업+관광 수요·편익추정 0.45]+[③재무성 0.1]+[④대규모 사업 0.15]+  
• [⑥기반/상부시설 별도 0.25]=2.15억원(감평비 별도)

7) LIMAC 조사사업 수수료 산정기준 종합

단계	유형	내용	수수료(만원)	비고
기본 수수료	상	•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(복합시설, 복합단지 등)	12,000	난이도 고려
	중	• 정형화가 보통임(복합청사, 철도, 문화·관광·체육시설, 환경시설, 항만)	11,000	
	하	•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(도로, 청사 등)	9,500	
부가 수수료	①	•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	1,500~2,500	특이 사항 에 따라 변동 가능
	②	• 복합시설사업(주택/산단/R&D/관광/교육 등)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 추정	시설별 1,000~1,500	
	③	•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/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	1,000~2,000	
	④	• 사업규모가 큰 경우(ex.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) 또는 사업지가 광범위할 경우	1,000~1,500	
	⑤	• 특수한 기술성 검토(특수교량, 장대터널, 안전성 검토 등), 환경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	500~1,000	
	⑥	• 용지개발 분양사업과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이 분리되어 추가용역 필요한 경우	1,500~2,500	
	⑦	• 산업단지 관련 설문조사(기업입주수요 조사), CVM 설문조사 등	500~3,000	
	⑧	• 기타 쟁점(법률 검토, 민원 관련 인터뷰 등) 등 특이사항	300~1,500	
	⑨	• 사전표본평가 및 사후 감정평가	실비정산	
	⑩	• 해외사례 또는 관련 자료 획득을 위한 해외출장 필요한 경우	500~1,000	

#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한국지방행정연구원

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(LIMAC)

재정투자조사부장 송지영

Tel. 02-3488-7335 / Email. [sjy1001@krila.re.kr](mailto:sjy1001@krila.re.kr)